**고 발 장**

고 발 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피고발인 국민의힘 외 13명

|  |
| --- |
|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방송 관련하여,**  **㈜문화방송의 방송편성을 간섭한 방송법위반죄 혐의,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문화방송에 의무 없는 방송을 하도록 시도한 강요미수죄 혐의** |

2022. 1. 21.

위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 광 중

**대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상암동)

대표자 위원장 최성혁

위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서울 종로구 종로 1(교보생명빌딩) 9, 16층

담당변호사 김광중

(전화: 02-3458-0956, kjkim@hklaw.co.kr)

**피고발인 1.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 남중빌딩

대표자 이준석

연락처: 010-9035-1842, 02-784-4760

**2. 김기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550호

연락처: 010-4692-8600

**3. 추경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328호

연락처: 010-9173-5841

**4. 박성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936호

연락처: 010-9263-6131

**5. 유상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736호

연락처: 010-9035-1842

**6. 정희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436호

연락처: 010-2803-2291

**7. 한무경**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822호

연락처: 010-8590-8601

**8. 조태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709호

연락처: 010-9001-7307

**9. 박대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622호

연락처: 010-3719-3958

**10. 정경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335호

연락처: 010-2750-4859

**11. 홍석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634호

연락처: 010-5118-1549

**12. 태영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909호

연락처: 010-3172-1962

**13. 강대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341호

연락처: 010-2605-8080

**14. 이채익**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본관 511호

연락처: 010-3139-5301

**방송법위반죄 등**

# **고발 취지**

위 피고발인들을 방송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면밀히 수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 이유**

## **당사자들의 관계**

### **고발인**

고발인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 합니다)의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지부입니다(증 제1호증 고발인 고유번호증).

### **피고발인들**

피고발인 국민의힘(이하 ‘국민의힘’이라 합니다)은 국회 원내 제2정당이며, 피고발 2 내지 14는 국민의힘 소속 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피고발인 김기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과 강대식은 각 원내부대표의 지위에 있습니다. 피고발인 박성중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간사이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이며, 피고발인 정희용, 홍석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이며, 피고발인 이채익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등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음에도 피고발인들은 문화방송이 2022. 1. 16. 20:20경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피고발인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전화통화 녹음에 관한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합니다)을 할 경우 대통령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문화방송을 찾아가 자신들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문화방송으로 하여금 위 방송을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의 욕설에 관한 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1. **방송법위반죄**

피고발인들은 2022. 1. 14. 11:11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소재 문화방송 본사로 몰려가 그 중 김기현, 추경호, 박성중이 문화방송 사장실에서 문화방송의 대표이사 박성제, 보도본부장 박준우, 미래정책실장 이연주를 상대로 이 사건 방송의 포기와 이재명 후보의 욕설에 관한 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문화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자 그 소속정당인 피고발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문화방송의 방송 편성에 간섭하였습니다.

* 1. **강요미수죄**

피고발인들은 2022. 1. 14. 10:25경 단체로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소재 문화방송 본사로 몰려가 이 사건 방송의 포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자신들 단체와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문화방송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문화방송이 위 방송을 그대로 하고, 이재명 후보 욕설에 관한 방송을 하지 않음에 따라 미수에 그쳤습니다.

## **언론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 한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
|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5. 12. 22., 2020. 6. 9.>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

이와 같이 헌법과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방송법의 취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39호 결정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2019헌바439 결정).

|  |
| --- |
| [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2019헌바439호 결정]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방송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 중 하나로 인정된다.  방송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방송설립의 자유, 방송운영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프로그램의 자유) 등이 언급되고, 그 중 방송편성의 자유야말로 방송의 자유의 핵심이다. 이것은 방송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방송법 제2조 제15호 참조).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방송법 제4조). |

또한 대법원은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 **피고발인들이 문화방송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적 지위**

피고발인들은 현직 국회의원들이자 원내 제2정당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방송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은 문화방송의 방송 편성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 **문화방송의 인사권∙예산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송통신위원 임명에 관한 피고발인들의 영향력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5인의 방송통신위원 중 3인을 사실상 지명하는 권한이 있고, 피고발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2명의 위원을 지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 규정은 ‘추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권한 행사는 단수 추천 후 거부된 바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지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들을 통해서도 문화방송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화방송 사장,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영향력 행사

문화방송의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이며,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의 사장 등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동법 제6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들 선임권한을 갖는 피고발인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구성에도 관여하며, 결국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문화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로서 직접적 영향력 행사 가능**

문화방송에 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박성중은 위 위원회 위원이자 간사이며, 피고발인 정희용과 홍석준은 위 위원회 위원입니다. 게다가 피고발인 박성중은 문화방송이 적용 받는 법률들의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자 간사이기도 합니다.

위 위원회는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고, 문화방송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법률의 입법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문화방송에 대한 업무보고(사실상의 국정감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이채익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주관하는 콘텐츠진흥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이므로 피고발인들은 위 위원회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관련 입법을 통한 영향력 행사 가능**

위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인 피고발인들은 물론 나머지 피고발인이나 피고발인 국민의힘은 국회 제2원내 정당으로서 문화방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등 여러 법률들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등을 통해서 문화방송의 소유구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피고발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화방송을 민영화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  |
| --- |
| [증 제2호증의 1 문화방송 민영화 공약 언론보도] |
| [증 제2호증의 2 문화방송 민영화 공약 언론보도] |

### **국정감사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문화방송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국정감사 대상이지만, 문화방송은 사실상 국정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보고를 피고발인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발인들은 국정감사(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 준하는 업무보고(문화방송)를 통하여 문화방송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통한 영향력 행사**

방송통심의위원은 대통령 추천 3인,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3인으로 구성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법 제18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2조의 심의, 동법 제100조의 심의와 의결 등을 하므로(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피고발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문화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사실관계**

### **문화방송의 이 사건 방송 계획**

문화방송이 이 사건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2022. 1. 12. 06;04경부터 여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증 제3호증의 1 내지 5 각 통화녹음 방송 관련 언론보도).

방송에 대해 이견을 가지거나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싶은 시청자 내지 국민은 방송법 등에서 금지하는 간섭 행위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법과 다른 법률은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놓고 있습니다[[1]](#footnote-1).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방송이 위와 같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방송 내용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기 위해 보도자료 내지 해명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는 등의 공식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적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방송법이 금지하는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 **피고발인들의 문화방송 방송개입 목적 방문 계획**

피고발인 김기현은 2022. 1. 13.경 피고발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  |
| --- |
| [알림 - MBC 항의방문]  일시 : 22.1.14(금), 10:15  장소 : 상암 MBC  대상 :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과방위·문체위 위원 전원, 원내부대표단, 비례대표 국회의원  MBC의 도를 넘는 선거개입시도와 편파방송에 대해 항의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관 계단앞(국기게양대앞)에 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일(1.14) 09시 30분까지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내대표 김기현 드림 - |

위 내용을 보면 대상자는 국회 입법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와 문화방송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문화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문화방송의 방송 편성에 간섭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 **김건희의 문화방송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및 심문기일 예정**

한편 이 사건 방송의 대상자인 김건희는 2022. 1. 13.경 이 사건 방송의 금지를 구하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2022. 1. 14. 오전 11시경 위 법원에서 그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증 제4호증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 증 제5호증 방송금지가처분 사건검색화면).

그리고 위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의 채권자 대리인은 피고발인 국민의힘의 법률지원단장이자 ‘경기도당 수원시정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홍종기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증 제6호증 홍종기 변호사 위임장, 증 제7호증 홍종기 변호사 블로그).

그래서 위 가처분의 신청과 진행도 피고발인 국민의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2. 1. 14. 오전 10시 25분경 피고발인들이 방송 간섭 목적으로 문화방송 방문**

위와 같이 방송금지가처분 심문(오전 11시)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발인들은 단체로 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날 오전 10시 25분경 문화방송에 도착해서 함께 이 사건 방송의 포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발인들 중 김기현, 추경호, 박성중은 같은 날 오전 11시 11분경 문화방송의 사장실로 찾아가 문화방송의 박성제 사장, 박준우 보도본부장, 이언주 미래정책실장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의 포기와 이재명 후보 욕설에 관한 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
| --- |
| [피고발인 김기현]  “스트레이트 예정 방송, 공정하지 않고, 공영방송 할 일 아니다”  분명한 항의 의사 밝힌다.  [피고발인 박성중]  “한쪽에 유리하게 방송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  “특정 후보 도우려고 기획, 편파 방송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명 형수 욕설 육성 파일 가져왔다. 15분 분량. 똑같이 공정하게 균등하게 틀어달라” |

특히 피고발인 박성중은 문화방송에 이재명 후보 욕설을 방송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컴퓨터 파일이 담긴 USB를 박성제 사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증 제8호증 피고발인들 전달 이재명 욕설 파일 USB 사진).

피고발인 박성중은 위와 같은 사실을 2022. 1. 14.자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하이킥’에 출연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  |
| --- |
| [증 제9호증 피고발인 박성중 인터뷰 보도 중 제4면] |

1. **피고발인의 행위와 관련된 범죄의 성립**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발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들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 **방송법위반죄의 성립**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행위를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  |
| --- |
|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5. 12. 22., 2020. 6. 9.>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의 취지에 관해 “방송은 문자가 아니라 시청각을 위주로 하는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됨으로써 인쇄매체에 비해 강한 호소력이 있고, 많은 시청자에게 집단적ㆍ무차별적으로 동시에 전달되므로 여론 형성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의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취지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
| --- |
| [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2019헌바439호 결정]  이 사건 금지조항은 ‘누구든지’ 간섭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그 행위의 주체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국가권력을 가리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의 제 세력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 여기서 다양한 사회세력이란 정당(여당ㆍ야당)과 같은 정치권력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조합(언론노조 및 기타 노조), 그리고 대기업이나 광고주 등을 포함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존재를 모두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람의 행위라면 ‘간섭’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행위자는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또는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지위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섭은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할 것인바, 그 대상에는 방송법상의 방송편성책임자는 물론 방송편성에 관계하는 종사자도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 여부는 법적ㆍ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법적ㆍ형식적ㆍ최종적 결정권자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한다면 실질적ㆍ중간단계상의 결정권자를 통한 개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방송법은 ‘간섭’이라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방송법에서 사용한 ‘간섭’의 뜻이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이라는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간섭 행위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 통상적인 용례에 따라 의미를 알 수 있어서 굳이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중략)  간섭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즉, 대면접촉은 물론 전화ㆍ이메일을 통한 연락을 불문하며, 위협, 협박, 강압은 물론 회유, 권유라는 수단도 가능할 것이다.  간섭 행위의 시점에 관해 보자면, 간섭은 방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인바, 방송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을 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비평ㆍ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에서 더 나아가 향후 이루어질 방송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의 방송을 요구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채 특정 방송내용을 교체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가 될 것이다.  끝으로,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의 결과로 방송편성이 변경ㆍ취소되는 등의 현실적 침해가 발생할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위험의 야기로 위반행위는 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방송편성이 변경ㆍ취소될 현실적 위험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도 않으며 방송편성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일반적 위험만으로 족하다고 하겠다. |

과거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2014년경 KBS의 보도국장에게 전화하여 세월호 사고에 관한 해양경찰 비판 보도에 대해 그 시기와 내용에 관하여 항의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해경과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방송법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내지 4 방송법위반죄 1~3심[[2]](#footnote-2) 판결문).

위 사례에서 법원은 방송법의 위 조항이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의 자유 즉 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가지는 중대성과 이것이 무너졌을 경우 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강한 부정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 위반의 처벌규정은 방송편성에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실제 방송편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방송법위반죄 1심 판결문 중 제8면).

앞서 본 사실관계에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발인들의 위 행위들은 방송법이 금지하는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문화방송은 피고발인들의 간섭과 위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 사건 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들의 방송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강요미수죄의 성립**

우리 형법은 강요죄의 미수를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  |
| --- |
|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앞서 본 사실관계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발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문화방송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위 강요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이 명백합니다.

##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들을 방송법위반죄, 강요미수죄로 고발하오니 면밀히 수사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 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시청자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편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불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방송법 제35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방송사업자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제14조 내지 제17조).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아니라도, 방송사업자 사내 고충처리인에게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제6조). [↑](#footnote-ref-1)
2.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62,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50, 3심: 대법원 2019도16319 [↑](#footnote-ref-2)